

**제2602호**  
2018. 10. 17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
편집인: 공 보 실 장 신 선 애  
전화: 3396-4952  
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선	기관의장
람	

# 구 보

● 고 시

- 제2018-109호 :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..... 2
- 제2018-110호 :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..... 3
- 제2018-111호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고시 ..... 4

● 공 고

- 제2018-704호 :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..... 5
- 제2018-710호 : 대부(중개)업체 소재확인 공고 ..... 6
- 제2018-712호 :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자매입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.. 7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 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2 / FAX.(02)3396-9022/3
-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		
람												

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109호

도로명주소 부여고시

우리구 신축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10월 1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기준
		도 로 명 고시일	도 로 명 부여기준
신당동 292-48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12	2018.10.17.	다산로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04.22.	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호 인용
오장동 206-34	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26-1	2018.10.17.	마른내로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05.26.	옛 지명인 건천동에서 유래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 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110호

### 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 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10월 17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연번	도로명주소	지번주소	폐지일자	폐지사유
1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12	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92-48	2018.10.17.	건물말소
2	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26-1	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206-34	2018.10.17.	건물말소
3	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가길 32	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62-1	2018.10.17.	건물말소
4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다길 41	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9-17	2018.10.17.	건물말소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[www.junggu.seoul.kr](http://www.junggu.seoul.kr)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111호

##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109호(2015. 12. 23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18년 10월 1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136-20번지 일대, 1,534.9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성명 : (주)에이치투디앤아이 대표이사 홍상혁
  - 주소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52, 603-1(장안동, 경남빌딩)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48개월
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18. 10. 17.(예정)
6. 변경 사유
  - 구역면적 변경 :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 외 건축물 점유 국유지 제척
  - 주용도 변경 : 관광숙박시설 → 생활숙박시설
7. 관계도서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54)에 비치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-704호

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

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,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)규정에 따라 운행 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8. 10. 17.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

1. 공고의 명칭 : 자동차 운행정지 공고

2. 공 고 기 간 : 2018. 10. 17. ~ 2018. 10. 31.

3. 공 고 대 상

- 자동차등록번호 : 06어88\*\*외 2대
- 소 유 자 명 : (주)에\*\*턴외 2대
- 운행정지 명령일자 : 2018. 9. 1. ~ 9. 30.
- 운행정지 사유 : 소유자 요청

4.공 고 내 용

-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,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,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(02-3396-624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운행정지 자동차 현황

연번	운행정지상태	자동차등록번호	소유자명	소유자등록번호	사용분거지주소
1	등록	06어88**	(주)에**턴	110111-3*****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
2	등록	서울44구73**	김*도	600201-1*****	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60길
3	등록	05고46**	표*녀	440906-2*****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8다길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 - 710호

### 대부(중개)업체 소재확인 공고

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(중개)업체 중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하여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3조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)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(공고내용 및 방법)와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부업체 소재확인을 공고합니다.

2018. 10. 17.  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

가. 공고의 명칭 :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고

나. 공고의 기간 : 2018. 10. 17. ~ 2018. 11. 16. (1개월)

다. 공시송달 대상

연번	등록번호	업 체 명	대표자	사업장 주소 (건물번호 이하 생략)
1	2018-서울중구-0024(대부업)	모두의머니대부	고 *희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21-7, 금성빌딩 107호(신당동)

라. 법적근거 : 『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13조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) 제2항제6호,  
같은 법 시행령 제8조(공고내용 및 방법)

마. 소재확인 통지

-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, 5층 시장경제과(예관동, 중구청)
- 담당자 : 김병호 (☎ 02-3396-5093, FAX : 02-3396-8685)
- 통지기한 : 2018년 11월 16일(금) 까지

바. 공시송달 내용

- 1) 위 대부업자는 공고기간 만료 전까지 소재확인 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2)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며, 향후 5년간 대부업 등의 등록이 제한됩니다.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 2018-712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 
 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 
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공용·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8. 10. 17.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

##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·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- 기금재원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을 신설토록「서울특별시 중구 공용·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, 향후 구유재산의 감소방지 및 대체재산의 안정적 공급토대를 마련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기금 재원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신설

### 3. 의견제출

-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재무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, 서울 중구청), 문의전화 : 3396-5012, FAX: 3396-8670, 전자우편 : gigusarang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 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첨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·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
 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[첨부]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·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·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공용·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첨부] 신·구조문 대비표

#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금의 재원) (생 략) 1. (생 략) <u>2. 그 밖의 수입금</u>	제3조(기금의 재원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<u>2.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</u> <u>3. 그 밖의 수입금</u>